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도시안전과)

의안번호	제262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(2024. 3. 6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,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. (대법원 2000.5.30. 선고99추85판결)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

2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7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4. 2. 1. ~ 2. 21.
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4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¹⁾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²⁾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,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○ 우리구는 2006년 12월 29일, 법이 개정된 2016년 이전의 법 제4조 제5항³⁾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 시행하였음.

1) 제76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·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
2) 제73조(권한의 위임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(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)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·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4. 8. 6., 2017. 1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17. 1. 26., 2017. 7. 26., 2018. 10. 23., 2024. 2. 6.>

3)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- 그러나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개정(법률 제13924호, 2016. 1. 27. 일부개정)⁴⁾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- 그동안 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(‘16. 1. 27. 개정 前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, 사업추진으로 인한 재해영향, 재해저감 계획 등의 평가 및 심의를 목적으로 구성·운영되어왔음.
-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9년 5월 공문⁵⁾을 통해 법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로써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구

4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(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)

(개정 전)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(‘16. 1. 27. 개정 후)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5) ‘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’ 행정안전부 (하천관리과-8223, 2019.5.31.)

가. ~ 나. (생략)

다. 따라서 「지자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는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 지자체별 「재해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성·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을 요청한 바 있고,

- 대법원 판례(대법원 2000.5.30. 선고 99추85 판결)⁶⁾를 살펴보면, 기관위임사무⁷⁾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

6) ‘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’ (대법원 2000.5.30. 선고 99추85 판결) 판례 중
[판시사항]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
[판결요지] 지방자치법 제15조, 제9조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,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,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.

7) 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(국가사무의 위임)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정부조직법」 제6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.

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는,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. 단체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. 기관위임사무의 예는 도로·하천·공원 등의 유지·관리·호적·경찰사무 등이 있다.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·직할시·도·시·군 등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(국가사무)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·직할시·도·시·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, 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기타 국가의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.

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무에 관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,

-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‘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’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적으로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.
- 따라서, 동 조례 폐지 후 관련 사무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 여겨지고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, 본 조례 폐지 후 관련 사무의 연속성을 위해 구에서는 규칙 제정 등의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여겨짐.